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권영희 의원 외 9명
- 나. 의안번호: 제1304호
- 다. 발의일자: 2020. 2. 5.
- 라. 회부일자: 2020. 2. 12.

2. 제 안 사 유

- 기후변화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 이를 “출연금”으로 명시하고 있어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조례 제4조제1호 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”을 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”으로 각각 변경함.
 - 출연금: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 - 기금전출금: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

나.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(안 제7조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9조의2,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례 제명 등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기후변화기금은 온실가스 저감,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,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,

주요 재원으로는 시 일반회계 전입금, 기금 운용 수익금, 국가 및 은행 차입금,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및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 등이 있음.

- 본 기금은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운용됨. 2020년 기준(2019.7)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 수입항목으로 전입금, 보조금, 차입금, 융자금 회수, 예탁금 원금 회수, 예치금 회수, 예수금,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총 9가지로 구분하고 있음.

-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“출연금¹⁾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, 본 개정안에서는 이를 “기금전출금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1)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
- 그러나 “기금전출금”은 일반회계에서의 세출항목에 적합한 용어이고,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이미 “전입금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의 띄어쓰기 정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.

<세입과목 범례>

구 분		과 목
수입	전입금	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(721-01), 공사·공단전입금(721-02), 기타 회계전입금(721-03), 기금전입금(721-04),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(721-05), 자치단체간 부담금(222-01)
	보조금	보조금(500)
	차입금	국내차입금(610), 국외차입금(620)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민간융자금회수수입(713-01),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(216-02), 공사·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(713-03), 공사·공단 등 융자금 이자수입(216-04),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(713-04), 시군구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(216-06), 통화금융기관 융자금(713-02), 통화금융 기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(216-03)
	예탁금원금 회수	예탁금원금회수(722-03)
	예치금회수	예치금회수(714-01)
	예수금	예수금수입(722-01)
	이자수입	공공예금이자수입(216-01), 기타이자수입(216-03), 예탁금이자수입(722-04)
	기타수입	그 외 세입과목